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179

발의연월일 : 2026. 4. 8.

발 의 자 : 한지아・배준영・김기현
조지연・김재섭・서일준
이상휘・고동진・김 건
조은희・강대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5년 12월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용・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, 이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근거법률에 신용・체크카드 납부를 규정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부담금 징수 실적 또한 제고되었음.

그러나,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아직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,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음.

한편, 최근 「담배사업법」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, 새롭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세・중소 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경우 현금 납부에 대한

어려움과 이에 따른 체납 발생 등 초기 제도 편입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,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정적 수납 징수체계 정비가 필요함.

이에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, 신규 납부 의무자들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부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도의 안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4(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)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(이하 “납부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(이하 “신용카드등”이라 한다)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②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.

③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3조의4(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)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(이하 “납부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(이하 “신용카드등”이라 한다)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. ②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. ③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